

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6. 7. 26.
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제안이유

○ 규칙 내의 간사 명칭을 위원회내에서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의 실질적 수행 역할에 맞추고 대구시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 제고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(안 제54조, 제66조)

3. 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규칙 제 호

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에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66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<u>간사</u> <u>와</u> 협의하여 정한다	제54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 -----
제66조(위원회 회의록)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 리한 <u>간사가</u> 서명·날인한다.	제66조(위원회 회의록) ③ -----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----

관계법령

[지방자치법]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